

검 토 보 고

1997. 3. 1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 : 1997년 2월 21일

○ 회 부 : 1997년 2월 22일

3. 제안이유

- 국내여비규정 개정 ('96.12.31) 에 따라
용어변경 및 여비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여비의 종류중
 - 현지교통비를 일비로,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
-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여 변경함
 - 일 비 : 6,500원 → 10,000원, 숙박료 : 37,500원 → 41,000원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(안) 을
검토한 바, 본 개정조례(안)은

- '96.12.31일 개정된 (대통령령인) 국내여비규정에 따라
용어정비와 여비지급 단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